

2023 『하끝 세법(1쇄)』 추록 및 정오표

2023 『하끝 세법(1쇄)』의 추록 및 정오표를 올립니다. 세법 시행령이 당초 안과 비교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,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일부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| 페이지 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---|---|---|
| p11 | (8) 수용등 경우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~ |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4조 제4항(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)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|
| p22 | ② 영유아~포함) | ②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상 형태의 분유 포함) 개정 (일몰기한 삭제) |
| p36 | (사) 매출에누리를 ~ | (사) 매출에누리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|
| p41 | ① 의무발급사업자 : ~개인사업자(이하 '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')*는 ~ 개정 (종전 : 2022.7.1.부터는 2억원, 2023.7.1.부터는 1억원, 이하 같음) *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본다. 개정 (2023.7.1.부터 시행) | ① 의무발급사업자 : ~개인사업자(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포함, 이하 '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'라 함)는 ~ 개정 (8천만원은 2024.7.1.부터 시행하나, 그 외의 개정사항은 종전의 1억 원을 기준으로 2023.7.1.부터 시행함, 이하 같음) |
| | ④ 의무발급시기 : 전자~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전자~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개정 (2023.7.1.부터 시행, ~) | ④ 의무발급시기 : 전자~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~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. 개정 (1억원 기준으로 2023.7.1.부터 시행~) |
| | ⑤ 통지의무 : 관할 ~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~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~ | ⑤ 통지의무 : 관할~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~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~ |
| p44 | ⑤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~ | 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|
| p55 | ⑤ 제조업(과자~제분업·양복점업 ~ | ⑤ 제조업(과자~제분업·떡방앗간·양복점업 ~ |
| p140 | * 외국자회사의 요건 : ~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| * 외국자회사의 요건 : ~ 보유(내국법인이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,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)하고 있는 외국법인 |
| p143 | * '중소기업 ~ 인건비(퇴직급여 포함)가 ~ | * '중소기업 ~ 인건비가 ~ |
| p153 | ㉠ 동창회~·새마을금고, 정치자~ | ㉠ 동창회~·새마을금고(단,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일반기부금), 정치자금~ |
| p157 | ② 보험회사 : ~ | ② 보험회사 :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·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신설 |
| p158 | 취득원가-익금불산입된 수입매당금액*2) | 매입가액-익금불산입된 수입매당금액*2) |
| p164 | ③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: ~공익법인(舊법정·지정기부금 해당 법인)에게 | ③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: ~공익법인(특례·일반기부금 해당 법인)에게 |
| p188 | 내국법인이 ~ 6개월 이상(적격구조조정 중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,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) 계속하여 보유하고 ~ | 내국법인이 ~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(내국법인이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,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)하고 ~ |
| | ③ 공제한도금액을 ~ 않는다. 이 경우 ~ | ③ 공제한도금액을 ~ 않는다.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(법령 94 ㉠). |

| 페이지 | 수정전 | 수정후 | |
|------|--|--|-------|
| p204 | (가) 수익자가 ~것[목적신탁(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)은 제외]. 다만, ~ 개정 | (가) 수익자가 ~것. 다만, ~않는다. | |
| | 2) 위탁자~신탁 :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신탁 개정 (중전 : 요건을 모두) | *2) 위탁자~신탁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 개정 (중전 : 요건을 모두 갖춘) | |
| p234 | 02 × [각 사업연도 ~100분의 60으로 한다] | 02 × [각 사업연도 ~100분의 80으로 한다] | |
| p296 | 50 영리내국법인~은 얼마인가? (단,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으로 가정함) | 50 영리내국법인~은 얼마인가? (단,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제외 대상으로 가정함) | |
| p318 | ※ 성실신고~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50% ~ | ※ 성실신고~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%~ | |
| p322 | ①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: 100% 개정 (2023.3.1.부터 시행) | ①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: 100% | |
| | ③ 고향사랑기부금 : 이월공제 × 개정 |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이월공제 × | |
| |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이월공제 × | | |
| | ③ 인도기준 ~ 경우와 K-IFRS를 적용하는 배당소득공제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의 경우 | ③ 인도기준 ~ 경우와 K-IFRS를 적용하는 배당소득공제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의 경우 개정 | |
| p324 | ② 고향사랑~ ③ 특별재난지~ ④ 회비~ ⑤ 법령~ | ② 특별재난지~ ③ 회비~ ④ 법령~ | 특례기부금 |
| | 정치자금(개인) 고향사랑(개인) 특례기부금 | 정치자금(개인) 특례기부금 | |
| | (기준소득금액-~기부금- 고향사랑기부금 - 특례기부금) × 30% 개정 | 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- 특례기부금) × 30% | |
| | * 소득금액 = 기준소득금액 - ~ 고향사랑기부금 - 특례기부금 ~ 개정 | * 소득금액 = 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정치자금기부금 - 특례기부금 - 우리사주조합기부금 | |
| p341 | (가) 6촌 이내의 혈족 (나) 4촌 이내의 인척 (다) 배우자~ (라) 친생~ | (가) 4촌 이내의 혈족 개정 (2023.3.1.부터 시행, 중전 : 6촌) (나) 3촌 이내의 인척 개정 (2023.3.1.부터 시행, 중전 : 4촌) (다) 배우자(사실혼 포함) (라) 친생~ (마) 본인인 「민법」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(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 신설 (2023.3.1.부터 시행) | |
| p356 | ③ 미숙아~(+) 전 액 × 20% = B 개정 ④ 난임~ (+) 전 액 × 30% = C 개정 | ③ 미숙아~(+) 전 액 × 20% = B ④ 난임~ (+) 전 액 × 30% = C | |
| p358 | ⑦ 고등교육법 제34~ | ⑦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(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료)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(대학입학전형료) 개정 | |
| p361 | 재해발생일 ~세액 ^{*1} (중전 규정의 가산금 포함) × 자산상실비율 ^{*2} ~ | 재해발생일 ~세액 ^{*1} × 자산상실비율 ^{*2} ~ | |
| p377 | 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~ | * 양도가액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부동산의 평가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라 평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개정 | |
| p420 | 이 자 8+2=10 | 이 자 8+2=10 ^{25%} | |
| p445 | 84만원+1,200만원을 초과~ | 84만원+1,400만원을 초과~ | |
| p470 | ② 포탈세액 ~ (위의 ①~⑦의 재산가~ | ② 포탈세액 ~ (위의 ①~⑧의 재산가~ | |